

검 토 보 고 서

2023. 12. 4.(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58)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5년)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입법예고 : 2023. 10. 5. ~ 10. 25.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5년)을 연장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개정내용

- (안 제2조의2) 존속기한 연장하는 내용임.
- (안 제8조) 불필요한 규정 삭제하는 내용임.

6.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회계의 구분)에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5년)이 2023.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로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